

우: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[<http://www.kma.org>]/전화(02)6350-6536 전송(02)793-8702  
의무법제국장 광석철(6573)/ 의무팀장 박일현(6540)/ 팀원 조시형(6536)/ E-mail: kmamedi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41-02563호

시행일자 2025. 6. 5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국내 성홍열 발생 증가에 따른 예방·관리 수칙 홍보 협조 요청(질병관리청)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 근거 :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-1042 (2025. 6. 2.)

3. 질병관리청에서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성홍열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·관리하고 있으며, 최근 국내에서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성홍열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유행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 협회에 <성홍열 예방·관리 수칙>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해 온바,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단체 및 회원에게 널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*< 성홍열 예방·관리 수칙 >**

■ 일반 예방수칙

- 1) 올바른 손씻기 준수
  - 비누나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
  - 외출 후, 식사 전, 배변 후 손씻기
- 2) 기침 예절(옷소매로 가리고 기침, 마스크 사용 등) 준수

■ 영유아, 소아 집단시설(유치원, 어린이집, 학교 등) 예방·관리수칙

- 1) 평상시 예방 수칙
  - 일반 예방수칙 지속 강조
  - (환경소독) 가구 표면, 장난감, 손잡이, 수도꼭지 등 환경 표면을 자주 청소·소독
- 2) 성홍열 의심 환자 발생 시 관리
  - 발열, 인후통 등 성홍열 의심 증상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 의료기관 진료 안내
  - 성홍열 진단 시, 항생제 치료 시작 후 최소 24시간까지 등원 중지
- 3) 성홍열 유행\* 발생 시 관리
  - 학부모 및 직원에게 성홍열 발생주의 안내문 발송

\*유행 : 동일 학급이나 동일 반 등에서 7일 이내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성홍열 환자나 의사환자가 2명 이상 발생

※ 붙임 : 질병관리청 공문 1부.

성홍열 개요 1부.

성홍열 발생 현황 1부. 끝.

# 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  
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  
중보건의를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